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79
----------	------

2020년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3월 25일 김종무 의원 (찬성18명)
2.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3. 상정일자 :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6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요지

### 1. 제안이유

- 거주지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출 후 재전입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다수 있음에도 서울특별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라는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타 지자체와의 중복 수령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단위인 거주 '1개월'로 지원 대상 조건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및 시행령 등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해당없음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동조례 개정안은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요건 중 거주요건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에서 서울시로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거주기한이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제안되었음.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현재 서울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의 대상자를 3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서울시로 전입해오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보훈대상자의 예우라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개정안은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의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임. (안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② (생략)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③ -----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⑤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가. 생활보조수당

- 생활보조수당은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선순위자 1인) 중 만 65세 이상이면서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음.
- 이에 생활보조수당의 지급제한 요건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이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음.

###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자)

- |                         |                          |                        |
|-------------------------|--------------------------|------------------------|
| ○ 순국선열 유족               | ○ 애국지사 및 유족              | ○ 전몰·순직군경 유족           |
| ○ 전(공)상군경 및 유족          | ○ 무공수훈자 및 유족             | ○ 6.25참전 재일학도외용군인 및 유족 |
|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4.19혁명사망자 유족         |
| ○ 4.19혁명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유족    |
| ○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 |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 ○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

### ※ '20년도 서울특별시 생활보조수당 지급 현황

#### ○ 지급대상 : 5,380명

- 대상 :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중 만 65세 이상이면서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조례 제7조)

※ 소득조사 대상 및 부양가족 기준은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기준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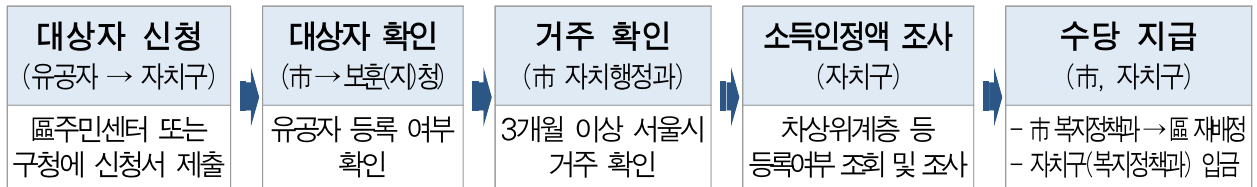
⇨ 통합조사결과 차상위 장애수당 또는 자활근로참여,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생활보조수당 지급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20.1월 현재 ' 55.1월 출생자)

- 지급금액 : 1인당 월 10만원
- 예 산 : 6,170,000천원(시비 100%)

- 현재 생활보조수당은 대상자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  
서 유공자 등록 여부와 3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가 확인한 후, 다  
시 자치구에서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수당을 지급함.

〈그림〉 생활보조수당 지급절차



**나. 보훈예우수당**

- 보훈예우수당은 동 조례에 의해 규정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  
자, 특수임무유공자 가운데 65세 이상 (유족 및 가족제외)으로 서  
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해 지원받  
고 있는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  
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4·19혁명 부상자, 4·19 혁명 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20년도 서울특별시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 지급대상 : 283명

- 대상 : 민주화운동·특수임무유공자 중 65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고,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에서 정한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482,000원)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대상자 (조례제7조제4항)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20.1월 현재 ' 55.1월 출생자)

○ 지급금액 : 1인당 월 10만원

○ 예 산 : 582,000천원(시비 100%)

- 보훈예우수당은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 시에서 직접 국가보훈처와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를 파악한 후 지급하고 있음.



- 국가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이들이 영예로운 삶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sup>1)</sup>
- 서울시는 『제2기 서울특별시 보훈종합계획』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편안하고 품위있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거주기간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어 불가피한 전출입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라는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대상자가 주소 이전을 했을 경우 자치구와 보훈지청을 통해 변동사항을 확인해야하는 과정이 있으나, 행정의 전산화 등이 진척되었으므로 거주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였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1) 한상용·김민호·이상현(2019),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지방자치단체 보훈급여금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18(2), 9-29.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79

발의년월일 : 2020년 3월 25일

발 의 자 : 김종무 의원(1명)

찬 성 자 : 이병도, 김화숙, 김제리, 고병국,  
정재웅, 신정호, 이경선, 성흠제,  
이영실, 김평남, 박기재, 이호대,  
김경우, 임종국, 이태성, 김경영,  
김호진, 정진술 의원(18명)

## 1. 제안이유

- 거주지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출 후 재전입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다수 있음에도 서울특별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라는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타 지자체와의 중복 수령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단위인 거주 '1개월'로 지원 대상 조건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및 시행령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각각 “1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u>3개월</u>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u>3개월</u> 이상 거주 하고,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지원 받고 있는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p>	<p>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1개월</u>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 ----- ----- ----- ----- <u>1개월</u> ----- ----- ----- ----- ----- -----</p>

금액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대  
상자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⑤ (생략)

-----  
-----  
-----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7조 (복지 및 생업지원) 제3항, 제4항의 서울시 거주기간 3개월을 1개월로 개정함에 따라 전입자의 생활보조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2개월 지급분 추가 비용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중 전입자에 대한 별도의 현황이 없어 비용추계 곤란
  - 단, 생활보조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개시 사유는 전입 뿐 아니라 65세 도래나 소득·재산변동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계층 해당(생활보조수당에 한함) 등의 다양한 사유가 있고 전입으로 인한 신규지급대상 인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무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